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11. 3 선고 2015가단1268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0. 13.

판결 선고 2015. 11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①의 각 점을 연결한 ㉔부분 약 57m², ㉕, ㉖, ㉗, ㉘, ㉙, ㉚, ㉛, ㉜, ㉝, ㉞, ㉟, ㊱, ㊲, ㊳의 각 점을 연결한 ㉞부분 약 53.75m², ㉟, ㊱, ㊲, ㊳의 각 점을 연결한 ㉟부분 약 28m²를 각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중환

별지